

기업예금안전거래서비스 이용약관

제 1조(목적)

- ① 이 약관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은행이 제공하는 기업예금안전거래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 법령,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기업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기타 관련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 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인권자"라 함은 기업이 기업예금 인출거래를 함에 있어 인출거래에 대한 허락여부를 결정하는 사용자를 말합니다.
2. "기업예금안전거래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라 함은 기업예금 인출거래를 함에 있어 기업이 지정한 승인권자가 승인을 한 후 예금 인출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참여자"라 함은 이 서비스에 따라 기업예금 인출거래에 대해 승인신청하고 처리하는 이 서비스 사용자들을 말하며, 각 참여자는 자신의 권한으로 승인처리 할 수 있는 전결한도를 가집니다.
4. "접속비밀번호"라 함은 참여자가 기업예금 인출거래에 대해 승인신청하고 처리하는 이용수단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 은행이 참여자 본인 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인터넷뱅킹용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5. "모바일접속비밀번호"라 함은 참여자가 기업예금 인출거래에 대해 승인신청하고 처리하는 이용수단으로 모바일폰용 서비스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은행이 참여자 본인 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바일 폰용 서비스프로그램의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6. "승인비밀번호"라 함은 참여자가 예금 인출거래에 대해 승인을 신청 및 처리할 때에 은행이 참여자 본인 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승인거래용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7. 기타 이 약관에서 정의하지 아니하는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기업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기타 관련 약관 및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조(서비스 범위)

- ① 은행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좌는 외화계좌를 제외한 당행 요구불계좌로 합니다.
- ② 은행은 기업예금 인출거래를 함에 있어 기업이 지정한 참여자가 승인을 신청 및 처리하는 이용매체로 기업뱅킹 Light와 모바일용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③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로 합니다. 단, 공과금납부, 대출원리금/이자상환, 사용자가 별도 계약을 통해 등록된 자동이

체, 기업뱅킹을 이용한 자금이체 등은 예외로 합니다.

제 4조(서비스 신청)

고객은 서비스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이 이를 확인,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합니다.

제 5조(참여자 확인)

- ① 참여자는 반드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핀패드(PIN-PAD)를 통해 승인비밀번호와 모바일접속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 ② 모든 참여자가 은행에 승인비밀번호와 모바일접속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신청은 유효합니다.

제 6조 (서비스 이용절차)

- ① 참여자가 자신의 전결한도 범위 내에서 승인요청을 할 경우에는 승인요청과 동시에 자동승인 됩니다.
- ② 참여자가 자신의 전결한도를 초과하여 승인요청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위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③ 참여자는 각자 접속비밀번호, 모바일접속비밀번호, 승인비밀번호를 가집니다.

제 7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 ① 은행은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2. 서비스의 이용수수료를 연체하는 경우
 3. 서비스 사용 중 발생하는 SMS발송수수료를 연체하는 경우
 4. 승인비밀번호, 모바일접속비밀번호를 날짜에 상관없이 연속 5회 잘못 입력하였을 때
- ② 은행은 제 1항 각 호의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제 8조(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자가 변경, 해지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은행이 변경, 해지처리를 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은 변경, 해지 됩니다.
- ② 은행은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3개월간 연체하는 경우
 2.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3. 고객이 기업뱅킹 Light를 해지 할 때에 서비스 참여자 모두가 해지되는 경우

제 9조(서비스 이용시간)

- ① 서비스 승인 요청 건에 대한 승인 가능 시간은 기

업뱅크 Light의 이용시간에 따릅니다.

- ② 서비스 승인 완료 된 건에 대한 은행 채널 별 계좌이체 및 현금출금 이용시간은 각 채널 별 이용시간을 따릅니다.

제 10조(서비스 이용수수료)

- ① 서비스 이용기간은 매월 1일에서 매월 말일까지 월 단위로 정합니다.
- ② 이용수수료는 이용기간 다음달 10일(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서비스 신청 시 기입한 수수료 출금계좌에서 자동 출금합니다.
- ③ 이용수수료는 서비스이용계좌의 월평균잔액이 은행이 정한 일정액 이상일 경우 면제 할 수 있습니다.
- ④ 이용수수료는 <표1>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표1. 기업예금안전거래서비스 이용수수료]

구분	가입월	이용월	해지월
이용수수료	무료	5,000원	5,000원

제 11조(SMS통지수수료)

- ① 서비스 신청, 변경, 해지 관련 SMS통지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 ② 서비스 이용 시 발송되는 SMS에 대한 SMS통지수수료는 서비스이용업체가 부담하며, 서비스 이용수수료와는 별도로 서비스 신청 시 기입한 수수료출금계좌에서 매월 은행이 지정한 날에 자동 출금합니다.

제 12조(비밀번호의 관리)

- ① 참여자는 비밀번호가 은행 직원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유출,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② 승인비밀번호, 모바일접속비밀번호의 조회나 확인은 불가능하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에는

영업점에서 비밀번호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 13조(면책 사항)

은행은 귀책사유가 없는 한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기기, 회선장애 및 전산시스템 장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정전, 화재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고객이 지정한 모바일폰과 서비스프로그램의 호환 불가 또는 모바일폰의 고장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고객이 기업뱅크 Light의 아이디(ID), 접속비밀번호, 승인비밀번호, 모바일접속비밀번호 등 접근수단 및 통신매체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도용, 위조, 변조 기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고객의 신청대로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객 이외의 제 3자가 통지된 내용을 인지한 경우

제 14조(약관 변경)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제 15조(합의관할)

본 약관상의 해석이나 이해에 있어 상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이용문의
하나은행 Call Center
1599-1111